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8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5.

발 의 자 : 신경민 · 박 정 · 노웅래
김민기 · 김정우 · 이찬열
문미옥 · 김해영 · 박남춘
한정애 · 윤관석 · 박용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·표시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화장품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그러나 소비자로서는 해당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, 일부 화학 성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단순 성분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화장품 성분의 기재·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, 색상 등을 달리하

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의 기재·표시를 할 때 해당 성분이 화장품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글자의 크기, 색상 등을 달리하여 기재·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량 및 인체에 대한 작용을 기재·표시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원료 사용상 제한이 있거나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장품 성분의 기재·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(통관일을 기준으로 한

다)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기재·표시상의 주의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기재·표시상의 주의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<u>성분의 기재·표시를 할 때 해당 성분이 화장품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글자의 크기, 색상 등을 달리하여 기재·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량 및 인체에 대한 작용을 기재·표시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원료 사용상 제한이 있거나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